

유타대학촌교회 헌법

The Constitution of Utah Campus Community Church

목차

전문	6
제 1 장 총칙	6
제 1 조 명칭	6
제 2 조 소속	6
제 3 조 소명과 목적	6
제 4 조 신앙고백	6
제 5 조 복음적 협력	7
제 6 조 성격	7
제 2 장 교회구성원	7
제 1 조 등록교인	7
1 항 정의	7
2 항 권리	8
3 항 의무	8
4 항 제명	8
5 항 징계	8
제 2 조 침례(세례) 교인	9
1 항 정의	9
2 항 권리	9
3 항 의무	9
4 항 제명	9
제 3 조 수석 교역자 (담임목사)	9
1 항 정의	9
2 항 자격	9
3 항 청빙과 선임	9
4 항 권리	9
5 항 의무	10
6 항 사례비	10
7 항 휴직/휴가	10
8 항 안식년	10
9 항 사임	10
10 항 해임	10
11 항 정년	11

제 4 조	부 교역자 (전도사 / 교육목사)	11
1 항	정의	11
2 항	자격	11
3 항	선임	11
4 항	권리와 의무	11
5 항	사례비	11
6 항	휴직 / 휴가	11
7 항	안식년	11
8 항	사임	11
9 항	해임	11
제 5 조	전도사의 목사안수	12
1 항	자격	12
2 항	인준	12
3 항	목사 안수 시취위원회	12
4 항	목사 안수식	12
제 6 조	안수 집사	12
1 항	자격	12
2 항	임무	12
3 항	선출	13
4 항	전입	13
제 7 조	서리 집사	13
1 항	자격	13
2 항	임무	13
3 항	인준	13
제 8 조	관재이사	13
1 항	자격	13
2 항	구성	13
3 항	선출	13
4 항	임무	13
5 항	임기	14
제 3 장	교회 회의와 부설기관	14
제 1 조	총회 (정기/임시)	14
1 항	정의	14
2 항	시기	14

3 항	의장.....	14
4 항	개회 정족수.....	14
5 항	의결 정족수.....	14
6 항	안건처리	14
제 2 조	운영위원회 (정기/임시).....	14
1 항	임무와 역할.....	14
2 항	부서의 구성.....	15
3 항	임기와 회기.....	15
4 항	개회.....	15
5 항	자격과 선출.....	15
6 항	의장.....	16
7 항	개회 정족수.....	16
8 항	의결 정족수.....	16
제 3 조	제작회 (정기/임시)	16
1 항	임무.....	16
2 항	시기.....	16
3 항	의장.....	16
4 항	개회 정족수.....	16
5 항	의결 정족수.....	17
6 항	서기 선임	17
제 4 조	부설회의	17
1 항	건축 위원회.....	17
2 항	징계 위원회.....	17
3 항	청빙 위원회.....	18
제 5 조	목장과 편성.....	19
1 항	목적.....	19
2 항	구성.....	19
3 항	자격 및 선출.....	19
4 항	임명.....	19
5 항	임무.....	19
제 4 장	재정.....	19
제 1 조	교회의 재산.....	19
1 항	정의.....	19
제 2 조	재정부장	20

1 항	선출.....	20
2 항	임기.....	20
3 항	의무와 책임.....	20
제 3 조	회계처리	20
1 항	기간.....	20
2 항	회계구분	20
3 항	헌금개봉	20
4 항	출납과 청구.....	20
5 항	감사.....	20
제 4 조	회계 감사	21
1 항	선출.....	21
2 항	임무.....	21
제 5 장	문서.....	21
제 1 조	보관 문서	21
제 6 장	교회 의식	21
제 1 조	정의.....	21
제 2 조	침례.....	21
제 3 조	주일만찬	21
제 7 장	헌법 개정	22
제 1 조	개정안	22
제 2 조	개정.....	22
제 3 조	효력.....	22
부칙	22

전문

유타 지역의 학원 선교에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학생 12 명은 1995 년 4 월 25 일 유타 기독교 학생회를 조직하여 '유타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다가 1995 년 12 월 17 일 775 S. 1300 E., Salt Lake City 에 교인 16 명으로 유타대학촌교회를 창립하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전력하기로 하다. 우리는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 공포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유타 대학촌 교회(Utah Campus Community Church, UCCC)라 칭한다.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속

본 교회는 미국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 소속한다.

제 3 조 소명과 목적

교회는 복음주의 신앙을 위주로, 유타 지역 대학촌의 복음화와 평신도 지도자 양성의 소명을 가지고 설립된 신앙 공동체이다. 이러한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교회의 목적으로 한다.

1. 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2. 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삼아, 신, 구약 성경에 명시된 진리를 배우고, 교육한다.
3. 본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실천한다.
4. 본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5. 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애를 나누고, 서로간 섬김의 본을 보여준다.

제 4 조 신앙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서, 성경만이 모든 믿음과 행동, 생활태도, 사고 방식, 가치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됨을 믿는바, 다음의 사항들을 본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삼는다.

1.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말씀으로, 그 모든 가르치는 바에 있어서 정확 무오하며,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필요 충분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 자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을 믿으며, 그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5.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에 하여 거듭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6.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예배와 교제,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7. 교회를 섬기도록 주께서 세우신 교역자의 직임과 성경의 만인 제사장 원리에 근거한 교회의 여러 지체인 평신도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8.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9.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자각하고, 이 땅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야 함을 믿습니다.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학문과 삶의 주인인 것과 이에 따른 청지기적 소명을 다해야 함을 믿습니다.

제 5 조 복음적 협력

본 교회는 다른 교회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 6 조 성격

본 교회의 모든 운영과 치리는 자체 헌법과 교회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교회구성원

제 1 조 등록교인

1 항 정의

새신자 교육을 이수하고 본 교회에 출석한지 3 개월이 지나 교인명부에 등록된 18 세 이상의 성도를 일컫는다.

2 항 권리

등록교인은 다음의 사항들의 권리를 지닌다.

- 1) 정기(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질의나 제안을 포함한 투표권을 가진다.
- 2)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3)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 4) 주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등록교인들은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본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3 항 의무

등록교인은 다음 사항을 지키는 의무를 지닌다.

- 1) 본 교회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이나 토론에 신중히 임하고, 개인의견을 표현한다.
- 2)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은사와 사명감에 알맞은 일을 찾아 봉사한다.
- 3) 본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봉사하거나 참여한다.

4 항 제명

- 1) 본 교회의 등록교인은 다음의 경우 교회 등록교인 명부에서 제명된다
 - ㄱ) 사망한 경우
 - ㄴ) 제 5 항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제명 또는 출교된 경우
 - ㄷ) 본인이 서면으로 제명을 원하는 경우
 - ㄹ)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타 교회로 등록하거나 개종한 경우
 - ㅁ) 정당한 이유없이 교회에 6 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제직회의 제청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 2) 1) ㄷ), ㄹ), ㅁ)에 의해 제명된 교인이 다시 등록교인이 되길 원할 시에는 1 조 1 항에 의하여 다시 등록교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5 항 징계

- 1) 본 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교인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어느 교인이 타 교인의 과오를 발견했다면 마태복음 18 장 15-17 절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만약 상기 조처로 문제 해결이 안 될 시 담임 목사와 운영위원회에 통고하여 권면을 받게 할 것이며 필요 시엔 적절한 해결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 출교 또는 제명은 총회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 2) 어떤 사유로 징계되어 제명된 교인이 다시 등록교인이 되길 원할 시에는 그의 회개와 변화된 증거에 의하여 총회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교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2 조 침례(세례) 교인

1 항 정의

등록교인 중 침례(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성도를 일컫는다.

2 항 권리

- 1) 등록 교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2) 침례(세례)교인으로, 1 년 이상 출석한 경우, 교회 기관이나 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3) 교회 기관이나 부서의 책임자나 리더에 관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3 항 의무

- 1) 등록교인에 해당하는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 2)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 3) 모든 성도 앞에서, 침례 교인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생활의 본을 보인다.
- 4)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한다.

4 항 제명

본 교회 헌법의 '교회구성원' 1 조 5 항에 해당하는 제명 규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 조 수석 교역자 (담임목사)

1 항 정의

본 교회의 수석 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일컬으며, 사역에 포함된 교회 운영과 사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도력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2 항 자격

담임 목사는 기독교 개혁파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침례교회 혹은 그 계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학원 선교 및 지역사회 복음화에 헌신하고, 교회 헌법을 준수하며 신앙과 행위로서 교인의 본이 되는 자.

3 항 청빙과 선임

담임 목사가 공석일 경우, 교회 총회에서 특정수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교회 총회에 초청하거나 추천하고, 교회 총회는 2/3 이상의 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선출된 목사는 본인의 요청이나 교회의 요청으로, 그 직책이 종료 될 때까지 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게 된다. 목사 초빙을 위한 총회는 소집전 최소한 2 주일간 연속적으로 공식 광고가 있어야 한다.

4 항 권리

- 1) 대외적으로 교회 및 모든 부설기관을 대표하는 권리를 지닌다.

- 2) 교회 내의 예배와 행사를 포함,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집전하는 권리를 지닌다.
- 3) 매년 열리는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
- 4) 매달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
- 5) 매달 열리는 제직회의 의장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

5 항 의무

- 1) 본 교회 교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교회의 조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2)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집회를 이끌고, 조연해 줄 의무가 있다.
- 3) 본 교회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캠퍼스 전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 4) 본 교회가 지역사회와 단체에 이바지하고 복음이 전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6 항 사례비

담임 목사의 사례비 및 모든 주어지는 혜택에 관해서는, 운영 위원회에서 매년 1 회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은 총회의 가결을 통해 확정된다.

7 항 휴직/휴가

- 1) 휴직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거나, 선교 목적,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
- 2) 휴가는 1 년 이상 근속한 경우 년 2 주를 원칙으로 하고, 10 년 이상 근속한 경우 년 3 주를 원칙으로 한다. 총회나 연장 교육에 참석한 경우는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휴가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8 항 안식년

담임 목사는 최소 6 년을 봉직한 후, 1 년간의 안식 기간을 갖되, 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 년 이하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9 항 사임

담임 목사가 사임할 경우, 적어도 2 개월 이전에 운영 위원회 및 제직회에 통고해야 한다. 통지가 접수되면, 교회는 사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제직 중 한 사람을 임시총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10 항 해임

본 교회의 교역자는, 제 2 장 1 조 5 항 및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시, 제직회 출석인원 2/3 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출석인원 3/4 의 동의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 1) 목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 될 시
- 2) 개종 및 이단 종교와 타협할 시

11 항 정년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은 만 65 세 (해당 년의 12 월 31 일 까지) 로 하고, 20 년 이상 봉직하고 정년으로 사임할 경우,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조 부 교역자 (전도사 / 교육목사)

1 항 정의

목사와 전도사를 교역자라 일컫지만, 수석 교역자는 담임목사를 일컫고, 부교역자는 직능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교육 전도사 / 교육 목사, 그리고 임시교역자

2 항 자격

기독교 개혁파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학원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 헌법을 준수하며 신앙과 행위로서 교인의 본이 되는 자.

3 항 선임

제직회원들의 추천과 다수결로서 운영 위원회 상정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 항 권리와 의무

제 3 조 '수석 교역자'의 4 항과 5 항에 표기된 담임 목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돕거나 보좌하고, 담임 목사 부재시, 담임 목사 지도하에 부과된 임무와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5 항 사례비

3 조 6 항, '수석 교역자 사례비'에 따른다.

6 항 휴직 / 휴가

3 조 7 항, '수석 교역자 휴직/휴가'에 따른다.

7 항 안식년

3 조 8 항, '수석 교역자 안식년'에 따른다.

8 항 사임

3 조 9 항, '수석 교역자 사임'에 따른다.

9 항 해임

3 조 10 항, '수석 교역자 해임'에 따른다.

제 5 조 전도사의 목사안수

1 항 자격

부교역자가 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기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본 교회 헌법 4 조 2 항에 명시된 교역자의 자격에 합당한 자.
- 2) 본 교회에서 2 년 이상 전임직 교역자로 재직한 자.

2 항 인준

부교역자의 목사 안수는 운영위원장이 부교역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목사 안수를 인준한다.

3 항 목사 안수 시취위원회

총회가 목사 안수를 인준할 경우 운영위원장은 인준 1 개월 이내에 목사 안수 시취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취위원회는 미 남침례교 지방회 소속 최소 3 명 이상의 목사님들로 구성되며 안수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4 항 목사 안수식

시취위원회의 심사 결과,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목사 안수식을 거행한다.

제 6 조 안수 집사

1 항 자격

- 1) 디모데 전서 3 장 8-13 절에 부합한 자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침례(세례)를 받은 후 5 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적 지도자 훈련을 이수한 자
- 2) 본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으며, 성도들의 신앙 발전과 교제를 도모하며 본 교회를 5 년 이상 섬겼으며 만 40 세 이상 만 65 세 이하인 자
- 3) 안수집사는 65 세까지 시무한다.
- 4) 안수집사의 임기는 3 년으로서, 임기 만료 후 1 년이 지난 이후에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재신임 절차는 2 장 7 조 3 항의 '선출'과 동일하다.

2 항 임무

- 1)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경의 본을 따르는 교회의 봉사자가 된다.
- 2) 교역자들을 보조하며, 성도들 간의 신앙발전과 교제를 도모한다.
- 3) 목자 혹은 부서장으로 봉사해야 한다.
- 4) 모든 예배와 기도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영적지도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한다.

3 항 선출

목사 혹은 운영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후 안수를 받음으로 피택될수 있다.

4 항 전입

타 침례교회에서 전입시, 본 교회 1 년 후, 그 직분을 총회의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득표로 시무할 수 있다.

제 7 조 서리 집사

1 항 자격

- 1) 구원에대한 확신을 가진 침례(세례) 교인인 자.
- 2) 본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
- 3) 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지 1 년이 경과했으며, 만 25 세 이상 되는 자.
- 4) '제직 서약서'에 서명을 한 자.

2 항 임무

- 1)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경의 본을 따르는 교회의 봉사자가 된다.
- 2) 교역자들을 보조하며, 성도들 간의 신앙발전과 교제를 도모한다.
- 3) 목사 혹은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3 항 인준

7 조 1 항에 의하여 총회 출석 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후 인준된다.

제 8 조 관재이사

1 항 자격

운영위원 중 2 장 8 조 3 항으로 선출된 자

2 항 구성

관재이사는 운영위원 3 인으로 구성된다. 재정부장은 운영위원 중 1 인으로 항상 포함된다.

3 항 선출

관재이사는 제직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재정부장은 자동으로 추천된다.

4 항 임무

관재이사는 교회 재산의 법적 관리를 담당한다. 교회의 총회의 인준 없이 이사들은 교회 재산을 사거나 팔거나 전당 잡히거나 임대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다. 관재이사들은 교회 재산을 매매, 차관 (mortgage), 임대, 혹은 법적 문서에 서명할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사들은 교회 재산을 매매, 차관(mortgage), 임대, 혹은 법적 문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들의 서명을 첨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항 임기

교회 회기년도에 준한다.

제 3 장 교회 회의와 부설기관

제 1 조 총회 (정기/임시)

1 항 정의

총회는 2 장 1 조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고, 하급 상설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와 제직회를 둔다.

2 항 시기

매년 두 번(1 월과 12 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시총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 1/2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 항 의장

총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임 목사에 관한 의결 시, 임시의장을 제직 중에서 선출 한다.

4 항 개회 정족수

등록교인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된다.

5 항 의결 정족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조항에 특별히 정해진 의결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의결기준에 따른다.

6 항 안건처리

총회의 주요 안건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12 월 정기총회: 각 부서장을 선출하여 차기 운영 위원회를 조직한다.
- 2) 1 월 정기총회: 본 교회 회계 결산과 예산, 업무보고 및 계획을 인준한다.
- 3) 임시 총회: 헌법 및 교회 규약에 관한 개정과 인준/임직자들의 선임, 사면, 징계, 및 해임, 그 외에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정기/임시)

1 항 임무와 역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과 같은 교회 운영 제반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

- 1)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다.

- 2) 매월 정기 운영회의에 출석하여,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상황, 사역의 성과를 평가, 점검한다.
- 3)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예(결)산을 담당한다.
- 4) 담임목사 및 임직자들의 인사 문제를 심의한다.
- 5) 부서 상호간의 긴밀히 협조하며, 활동상황을 매월 제직회에 추천 또는 보고한다.
- 6) 그 밖에 제직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인준한다.

2 항 부서의 구성

운영위원의 책임 하에 있는 해당 부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7개 부서로 나뉘며, 각 부서장은 최소 2인 이상의 부서원을 선발하여 부서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아래 7개 부서 이외의 새로운 부서 신설이 요구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다.

- 1) 예배부: 예배와 예배에 준하는 모든 교회의 행사 담당, 교회의 주요 문서 관리
- 2) 교육부: 교육과 관련된 행사 담당 (영아/유아/초등/중고등부)/교육부 소속 새교우 관리
- 3) 선교부: 세계 퍼져있는 선교사와 선교지 지원에 관련된 행정 /구제에 관한 행정 담당
- 4) 친교부: 교회의 각종 친교 행사 담당, 새신자 교육 및 현황 관리, 교역자의 심방 계획 추천
- 5) 관리부: 교회 모든 (부대) 시설물과 건물 수리와 유지 및 차량 관리에 관한 문제 담당
- 6) 재정부: 교회 모든 형태의 재산을 재정적으로 담당
- 7) 청년부: 청년들의 신앙생활 및 모든 청년관련 행사 담당

3 항 임기와 회기

부서장의 임기와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항 개회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시 운영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회할 수 있다.

5 항 자격과 선출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운영위원, 안수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들은 본 교회의 제직으로서,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추천 받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며, 담임목사가 상정한다.

- 1) 자격: 제직 중 성도의 모범이 되고, 학원 선교에 적합한 자로 본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자는 부서장으로 선출 될 수 있다.
- 2) 1차 인준: 담임목사의 상정을 받은 부서장을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인준 받는다.

- 3) 2차 인준: 1차 인준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운영위원회는 1주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부서장을 재상정하여 인준 받는다.
- 4) 3차 인준: 2차 인준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통 선거를 실시해 부서장을 선출한다. 3차 인준 후에도 부서장 선출이 안되면 공석으로 유지한다.
- 5) 공석: 부서장 공석 시에는 담임목사, 운영위원, 안수집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인준을 받는다.

6 항 의장

운영 위원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임 목사에 관한 의결 시, 임시의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진행한다.

7 항 개회 정족수

운영위원회 재적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 된다.

8 항 의결 정족수

재적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불참 위원의 경우, 불참 이유가 타당할 때, 차후 의결을 표시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조 제직회 (정기/임시)

1 항 임무

제직회는 본 교회의 제직들로 구성되며, 제직은 본 교회의 직분자 및 모든 교역자를 일컬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 1) 본 교회의 연간 행사계획과 예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직 서약서'에 서명하고, 명시된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 4) 각자 해당된 조직과 목장, 혹은 부서에서 봉사한다.
- 5) 새 신자가 본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설명해 준다.

2 항 시기

매월 1회 첫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시 제직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 1/5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 항 의장

제직회의의 의장은 담임 목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임 목사 부재 및 담임 목사에 관한 의결 시, 임시의장을 제직 중에서 선출하여 진행한다.

4 항 개회 정족수

제직회 재적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 된다.

5 항 의결 정족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6 항 서기 선임

원활하고 효과적 회의 진행을 위해, 서기 1 인을 제직 중에서 매년 선출한다. 선출은 제직회원 중에서 추천받으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임된다.

제 4 조 부설회의

1 항 건축 위원회

- 1) 명칭: 본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라 한다.
- 2) 구분: 본 위원회는 본 교회 운영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구분한다.
- 3) 권한: 본 위원회는 본 교회 건축 방안을 검토, 평가하고 계획안을 수립한다.
- 4) 의결: 본 위원회의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 5) 운영: 본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안을 준수한다.
- 6) 회원 임명: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ㄱ) 자격: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로서 본 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한 자 혹은 본 교회 건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 ㄴ) 임명: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될 수 있다.

2 항 징계 위원회

- 1)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임직들과 성도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2) 징계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회 내에서의 규율과 선도를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둔다. 징계 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한 징계 심사를 한다. 징계 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과 제직회원 중 총회의 의결에 따라 10 명의 징계위원을 선출한다.
- 3) 징계 위원회는 본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에서 벗어난 모든 성도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 4) 징계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된 징계 심사/처분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만료된다.
- 5) 징계위원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징계위원간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결정과 결의에 관한 투표권한도 동일하다.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징계처분 결정은 징계위원 전원 중 3/4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다.
- 6) 성도 상호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때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성경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여 징계하되 징계를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징계한다. 특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한다. 처벌보다는 구제가 성도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성도의 징계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된 징계처분 결정을 회중에 공지한다. 단, 제명/출교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총회에 상정하여 투표를 통해 의결한다.

3 항 청빙 위원회

- 1) 명칭: 본회는 유타대학총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이하 '청빙위원회')라 칭한다.
- 2) 목적: 본 청빙위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타대학총교회 헌법에 의해서 총회에서 결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구분, 구성, 조직, 위원의 업무 및 임기
 - ㄱ) 본 청빙위원회는 유타대학총교회 헌법에 따라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된 청빙위원들로 구성된다.
 - ㄴ) 본 청빙위원회는 본 교회 운영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구분된다.
 - ㄷ) 본 청빙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서기를 선출하여 운영한다.
 - ㄹ)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청빙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추천한 청빙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ㅁ) 서기는 본 청빙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및 자료들을 작성 보관한다.
 - ㅂ) 본 위원회의 임기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만료된다.
- 4) 권한과 책임
 - ㄱ) 모든 청빙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ㄴ) 모든 청빙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결정과 결의에 관한 투표권한도 동일하다.
 - ㄷ)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 ㄹ) 발표 및 공지사항은 교회 웹사이트, 주보, 또는 공지를 통해서 고지한다.
 - ㅁ) 모든 청빙위원들은 담임목사 후보자와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금한다.
- 5) 회의
 - ㄱ) 정기회의는 청빙위원회에서 합의된 일시에 정기적으로 반드시 청빙위원회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ㄴ) 임시회의는 청빙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다.
- ㄷ) 위원장은 정기/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준비를 할 책임이 있으며 2/3 이상의 청빙위원들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정기/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 6) 의결: 청빙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회의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임 목사 최종 후의 추천은 청빙위원회 출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단, 표결시 청빙위원이 부재할 경우 본인의 표를 청빙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 예외사항: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6 조에 따른 청빙위원회의 의결의 과정을 통하여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 조 목장과 편성

1 항 목적

목장은 목자를 지도자로 하여 교회의 선교사업을 지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와 믿는 성도들 간의 섬김을 목적으로 하며 매주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2 항 구성

각 목장은 목사, 부목자 및 목원들로 구성하여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3 항 자격 및 선출

목자는 각 목장의 운영을 책임지는 지도자이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적 지도자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에 목자 회의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 항 임명

목자기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치 못한 경우에는 목원들의 동의와 소속 목자들의 추천으로 대행 목자로 임명받을 수 있다.

5 항 임무

각 목장은 선교지를 선정하여 선교사를 지원하며 선교사로부터 선교 활동을 보고받아 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재정

제 1 조 교회의 재산

1 항 정의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의 각종 현금과 헌물을 비롯한,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제 2 조 재정부장

1 항 선출

매년 12 월 총회를 통해, 각 운영 위원회 위원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된다.

2 항 임기

각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1 년을 원칙으로 한다.

3 항 의무와 책임

본 교회의 재정부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 1) 교회의 모든 헌금과 헌물을 수입처리하고, 계산하고, 지출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2) 모든 재정현황을 항목별로 정기제직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 3) 매월 그리고 매년의 회계보고서를 헌금일지에 편철하고 영구보존한다.
- 4) 매년 회기연도 말, 본 교회에서 선임한 감사 2 명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 5) 매 회기연도 말, 총결산과 예산 편성을 돕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6) 본 교회 교인들의 세금 공제를 위한 헌금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3 조 회계처리

1 항 기간

본 교회의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2 항 회계구분

본 교회는 교인의 헌금 위주로 구성된 일반회계와 특정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나눈다.

3 항 헌금개봉

본 교회의 모든 헌금개봉은 재정부장 외에, 지정된 최소 1 명 이상의 계수위원이 행해야 하며, 헌금 액수나 그에 준하는 정보는 공공연히 발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항 출납과 청구

본 교회의 모든 출납은 반드시 재정부장의 확인을 통해 교회명의로 된 수표로 발행되며, 교회의 예산에 근거한 지출은 청구서를 포함, 영수증 동봉을 통해 청구가능하다. (단, 특별 지출이 있을 경우, 사전 제직회에서 심의 해야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항 감사

본 교회의 모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계년도 말, 제직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 2 명에 의해, 감사받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4 조 회계 감사

1 항 선출

본 교회의 결산 감사의 선임은 제직회에서 추천되고 선출하되, 최소 2 인으로 구성한다.

2 항 임무

본 교회 연간 회계업무와 결산 처리 결과에 대해, 그름과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5 장 문서

제 1 조 보관 문서

다음의 문서는 교회에 보관 관리하며 전임 교역자, 또는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는 열람할 수 있다.

1. 선교부: 선교 활동 기록부
2. 교육부: 주일학교 학생 명부, 교육활동 기록부
3. 예배부: 주보철, 회의록(총회, 운영위원회, 제직회), 교인 등록부, 공문서철, 사진첩
4. 재정부: 예결산서, 교인 헌금 기록부, 금전 입출납 장부, 영수증 및 수표철, 금융 기관 및 세금 문서철, 재산 대장

제 6 장 교회 의식

제 1 조 정의

의식이란 매주 정기적인 예배의식 이외에 교회가 행하는 특별한 의식을 칭한다.

제 2 조 침례

침례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서 교인들 앞에서 침수함으로써 행하여지며, 담임 목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주일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드리는 의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담임 목사가 의식을 드린다. 시기와 횟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헌법 개정

제 1 조 개정안

총회 10 인 이상의 서명으로 개정안이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시 회장은 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제 2 조 개정

총회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제 3 조 효력

개정 헌장은 개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 본 헌법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시 제출된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1995 년 12 월 17 일에 제정되었고,
1996 년 6 월 2 일 1 차 개정되다.
1997 년 6 월 8 일 2 차 개정되다.
1999 년 7 월 25 일 3 차 개정되다.
2000 년 6 월 18 일 4 차 개정되다.
2001 년 2 월 11 일 5 차 개정되다.
2001 년 8 월 12 일 6 차 개정되다.
2005 년 10 월 24 일 7 차 개정되다.
2007 년 4 월 1 일 8 차 개정되다.
2008 년 1 월 27 일 9 차 개정되다.
2010 년 5 월 16 일 10 차 개정되다.
2011 년 3 월 6 일 11 차 개정되다.
2011 년 11 월 6 일 12 차 개정되다.
2015 년 5 월 31 일 13 차 개정되다.
2015 년 8 월 2 일 14 차 개정되다.